

보도자료

2014. 11. 28.



대 법 원

Supreme Court of Korea

담당부서	사법지원실
담당자	사법지원심의관 이진웅(☎02-3480-1368)
공보관실 ☎ 3480-1451	

※ 엠바고 : 2014. 12. 1.(월) 조간용[2014. 11. 30.(일) 09시 엠바고 해제]

대법원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마련

- 대법원은 2014. 12. 1.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마련
⇒ 사실심 충실화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근본적·종합적 대책
 - ①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등 사실심 재판역량의 획기적 강화
 - ②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등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③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심리 충실화
 - ④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절차참여 확대
-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발전에 부응한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 2014. 12. 5. 전국법원장회의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주요 추진 과제를 확정하고,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밖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주요 추진 과제

①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등 사실심 재판역량의 획기적 강화

⇒ 원숙한 사실심 재판 실현

- 4년 내, 전체 단독재판장 50% 이상 부장판사 배치
- 경력 20년 이상 소액·중액전담법관 경력법관 임용 확대
- 고등법원 법관 전원을 15년 이상의 경륜 있는 법관으로 구성
- 법관 증원으로 1 사건당 심리 시간 확대

②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등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 심도 있는 사실심 재판 실현

- 준참심제인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재판 과정에서의 소통
- 전문 분야 사건의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

③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심리 충실화 ⇨ 충실한 사실심 재판 실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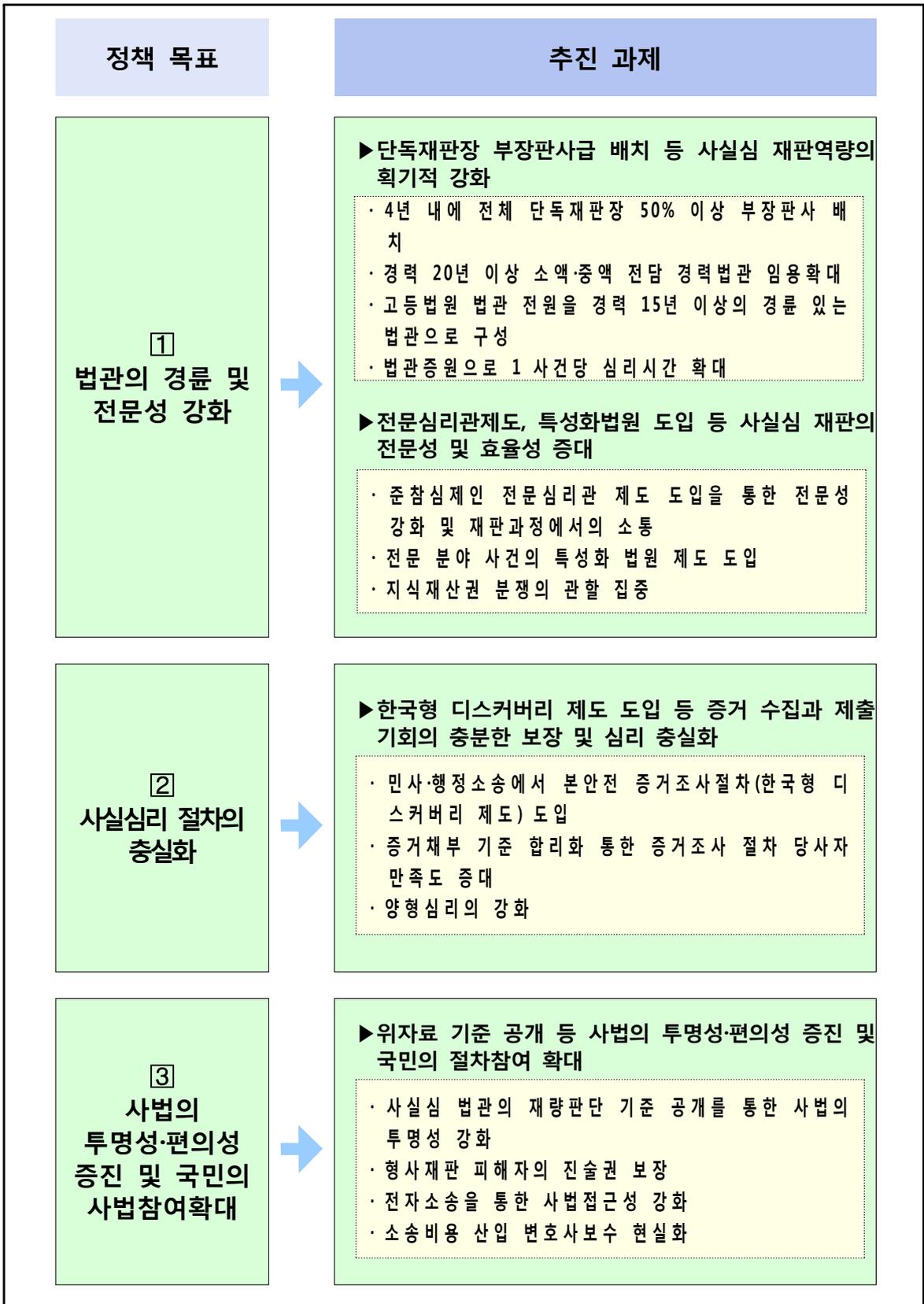
- 민사·행정소송의 본안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증거채부 기준 합리화 통한 증거조사 절차 시 당사자 만족도 증대
- 양형심리의 강화

④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절차참여 확대 ⇨ 공정하고 투명한 사실심 재판 실현

-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실심 법관의 재량 판단 기준 공표
- 형사재판의 피해자 진술권 보장
- 전자적 소송 환경 구현을 통한 사법 접근성 강화
-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의 정책목표

- ① 법관의 경륜 및 전문성 강화
- ② 사실심리 절차의 충실화
- ③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사법참여 확대



□ 주요 추진과제

① 단독재판장 부장판사급 배치 등 사실심 재판역량의 획기적 강화

① [방안] 4년 내에 전체 단독재판장 50% 이상 부장판사 배치

- 2015년부터 부장판사의 단독재판장 보임을 대폭 확대하여, 2018년까지 전체 단독재판장의 50%를 부장판사 경력을 갖춘 법관(15년 이상 경력)으로 배치

[기대효과] 경륜 있는 법관에 의한 원숙한 재판으로 단독재판의 신뢰도 향상

☑ 경력 15년 이상의 부장판사가 하는 단독재판으로 재판의 신뢰도가 향상됩니다.

② [방안] 경력 20년 이상 소액·중액 전담 경력법관 임용 확대

- 소액전담법관을 배치한 집중심리재판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나아가 민사단독 사건 전반으로도 임용 분야를 확대해 나갈 예정
- 2013년부터 법조경력 15년 이상의 소액전담법관 6인을 임용·배치하여 소속법원의 분쟁성 소액사건을 집중 처리하고 있고, 이에 대해 분쟁성 민사소액 사건의 재판 수준이 향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기대효과] 다양한 경험과 배경의 경력법관에 의한 원숙한 재판

☑ 경력 20년 이상 법관의 경험과 지식이 재판 결과에 대한 승복을 이끌어 냅니다.

* 향후 가사·소년보호 사건 등 다른 분야에도 점진적 확대를 검토할 계획

③ [방안] 고등법원 법관 전원을 경력 15년 이상의 경륜 있는 법관으로 구성

- 사건이 중하고 복잡한 고등법원의 법관 전원을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
- 서울고등법원의 경우 2016년 내지 2017년경에는 고등법원 법관 전원이 경력 15년 이상으로 구성될 예정

[기대효과] 2심 재판 인적 역량강화를 통해 사실심 종국률의 향상

☑ 경력 15년 이상 법관 3명으로 구성된 고등법원 재판부, 사실심을 실질적으로 종결 짓는 역할을 합니다.

④ [방안] 법관정원법 개정 따른 법관 증원으로 1법관당 사건 수 감소

- 법관정원 370명 증원으로 향후 단계적으로 임용 법관수 확대

[기대효과] 1사건당 심리시간 추가 확보로 심리 충실화 토대 마련

수많은 사건에 쫓겨 할 말도 다 못하는 재판, 법관 증원으로 법관을 대면할 시간이 늘어납니다.

② 전문심리관 제도, 특성화 법원 도입 등 사실심 재판의 전문성 및 효율성 증대

① [방안] 준참심제인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을 통한 전문성 강화 및 재판 과정에서의 소통

- 고도로 전문화, 다양화된 현대사회의 요청에 부응하고, 전문분야 재판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해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제도를 벤치마킹한 전문심리관 제도의 도입을 추진함

특허법원 기술심리관

▶ 근거 : 법원조직법 제54조의2

▶ 업무

- 소송의 심리에 참여(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소송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고, 재판의 합의에서 의견을 진술)
- 변론기일에 법정에서 좌배석 판사 옆자리에 착석
- 판결선고 7-10일 전에 재판부에 의견서 제출

- 특히, 의료, 건축 등 전문재판부에 의사, 건축사 등 비법관 전문가를 전문심리관으로 배치하여 소송의 심리에 참여시키고, 재판의 합의에도 의견을 진술하도록 한다면, 법원과 사회 사이의 접점을 넓힘과 동시에 사회가 수궁할 수 있는 적절한 결론이 제시될 것으로 기대됨

[기대효과] 준(準)참심제적 제도 도입을 통해 법원 재판의 신뢰도 제고

전문가의 지식과 경험이 법관의 법률지식과 만나면 재판에 대한 신뢰가 높아집니다.

② [방안] 전문 분야 사건의 특성화 법원 제도 도입

- 관할지역과 법원별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 분야 사건을 집중 처리하는 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고, 해당 법원 '특성화 법원'으로 운영

☑ 특성화 법원 관할 예시

- ▶ 국제거래 사건 ☞ 서울중앙지방법원 ▶ 증권, 금융 사건 ☞ 서울남부지방법원
- ▶ 언론, 개인정보침해 사건 ☞ 서울서부지방법원 ▶ 해사 사건 ☞ 부산지방법원

- 특성화 법원에는 복수의 전문재판부를 설치하여, 전문재판부 사이의 교류 및 토의를 활성화시키고, 전문 유관기관·전문가 사이의 간담회, 세미나를 수시로 개최하여 전문성 배양에 힘쓰도록 함

[기대효과] 일반법원과 전문법원이 합쳐진 하이브리드 법원 창설로 국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재판서비스 제공

☑ 1만 시간의 법칙, 법원도 예외가 아닙니다. 특정 전문분야를 주로 다루는 법원이 전문적 분쟁을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합니다.

③ [방안] 지식재산권 분쟁의 관할 집중

- 현재 전국 지방법원에 흩어져 처리되고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전국 고등법원 소재지 5개 지방법원 전속관할로 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선택적 중복관할을 인정하며, 특허침해소송의 항소심을 특허법원의 전속관할로 집중시킴
- 관할 집중된 지방법원의 지식재산권 전문재판부에 특허법원 법관 수준의 전문성 있는 법관을 배치하고, 기술심리관 등 특허법원 수준의 전문가 보좌

[기대효과] 집중적인 사건처리를 통한 지식재산권 분쟁해결 역량 극대화로 국가경쟁력 제고

☑ 지식재산권 소송, 지식과 경험의 집약적인 축적을 통해 전문적인 해결을 도모합니다.

③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증거 수집과 제출 기회의 충분한 보장 및 심리 충실화

① [방안] 민사·행정소송에서 본안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 당사자의 증거수집·확보 수단이 부족하여, 사실심 심리가 부실화되는 문제, 정보편중에 의한 절차적 불평등 야기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

수사기관을 통해 민사·행정사건의 증거를 수집하는 현실

- ▶ 일반 서민으로서 기업, 의료기관, 국가 등을 상대로 한 민사·행정소송을 제기하기 곤란한 현실

[예시]

-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 S씨
- S씨의 유족은 진료기록 등을 조기에 확보하여 의료진의 과오 여부를 신속히 파악하고자 하였으나 병원(A병원) 측이 진료기록 전체를 공개하지 않음
- 법원에 증거보전신청을 하고자 하였으나, A병원에 진료기록이 남아 있고, 소실될 위험이 있음을 소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증거보전의 필요성이 있음을 소명하기 곤란
- 곧바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고자 하였으나, A병원이 법원의 문서제출명령에 불이행해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못한다는 변호사 조언에 민사소송 제기 포기
- 변호사의 권유에 따라 형사고소 하였으나, 수사기관은 진료기록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 조치에 주저
- S의 사망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채, 시간만 6개월여의 시간 경과

- 영미식 디스커버리, 독일식 독립적 증거조사절차를 참조하여 ‘본안전 증거조사절차(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문서제출명령 불이행의 제재를 강화하여 증거수집절차의 실질화를 구현함
 - 소송계속 여부 및 증거보전 필요성 유무와 무관하게 오로지 증거수집을 목적으로 증인신문·검증·감정 등뿐 아니라 문서제출명령까지 독립된 절차로 신청하는 제도를 도입함
 - 본안 전에 조사된 증거는 본안소송에서 그대로 증거로 사용하도록 함
 -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할 경우, 문서로써 증명하려고 한 주장까지도 진실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함
- * 현재는 문서의 성질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대방이

문서제출명령을 불이행해도 제출대상 문서로써 증명하려는 주장을 인정받기 어려웠으나, 이러한 경우에도 개선안 시행 이후에는 당사자의 주장 자체를 진실하다고 추정할 수 있도록 하여, 문서제출명령의 실효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임

- 본안전 증거조사결과를 토대로, 조정·화해를 시도하여 조기에 화해적 분쟁 해결도 도모함

☑ 본안전 증거조사절차 도입에 따른 위 S씨 사례의 변화

- 법원에 본안전 증거조사절차로서 문서제출명령 및 서증에 대한 증거조사신청 (적은 비용, 소송제기 불필요, 증거의 소실위험 등 보전필요성 소명 불요)
- 법원은 S씨에게 발생한 인적손해에 관한 사실확정의 법률상 이익이 있음을 신속히 심사한 후, 이를 인정하고 A병원에 대해 문서제출명령을 내림
- A병원은 문서제출명령을 거부하려 하였으나, 거부하면 S씨 유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S씨 유족의 주장이 그대로 인정될 수 있다는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진료기록 일체를 법원에 제출
- 법원은 제출된 진료기록에 관한 증거조사 실시(쌍방 참여, 의견진술)
- 증거조사기일에 법원의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하여 진료기록 분석하고 시술 중 의료과오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서 제출
- 법원은 증거조사기일 말미에 증거조사결과를 기초로 한 화해안 제시
- 증거조사절차기록은 그대로 본안소송의 증거자료로 활용될 것인데, 본안소송은 별도의 더 많은 소송비용이 소요되고, 최종판결까지 상당한 시간도 걸리므로, S씨 유족과 A병원은 별도의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법원의 화해안 수용 → 의료분쟁의 조속하고 원만한 해결!

[기대효과] 증거수집 기회 확충으로 조기 분쟁해결 및 화해적 해결 촉진

☑ 사회는 복잡해지고 증거확보는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재판 전에도 법원이 증거의 확보를 도와드립니다. 증거가 확보되면 분쟁 초기의 조정과 화해가 가능해 집니다.

② [방안] 증거채부 기준 합리화 통한 증거조사 절차 당사자 만족도 증대

- 당사자 증거신청권 제약과 증거조사의 절차·결과에 대한 실질적 공방이 부족한 재판실무를 개선하여 사실심리절차가 법정 중심의 진실규명절차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
- 2014년 말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을 공표하여, 재판실무에 적용하도록 함

☑ '적정한 증거채부 실무운영 방안'으로 변화하게 될 재판실무

[재판실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증거채부 갈등사례]

- ① 증거신청을 하였으나, 재판부가 증거조사 해보나마나 믿기 어려울 것 같다는 이유로 증거신청을 배척하는 경우
- ② 이미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되었다는 이유로 당사자의 어떠한 증거신청도 더 이상 채택하지 아니하는 경우
- ③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증거가 신청되었음에도 재판부가 다르다는 이유로 채택 여부가 갈리는 경우
- ④ 재판부가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어느 사건이든지 획일적으로 1명 또는 2명으로 제한하는 경우



[변화할 실무]

- ① 재판부는 신청된 증거를 조사하기 전에는 신청된 증거의 개별 증거가치를 미리 예단하지 아니함
- ② 재판부의 심증이 형성되었더라도, 그에 반하는 증거신청의 조사필요성은 부정하지 아니함
- ③ 동일한 유형의 사건에서 동일한 증거가 신청된 경우에, 재판부별 증거채부의 편차가 발생하지 아니함
- ④ 재판부는 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는 증인의 수를 획일적으로 제한하지 아니하며, 신청된 증인 개개의 조사필요성과 절차운영의 적정성을 비교하여 채부를 심리함

- 법정 내 증거조사 절차에서는 조사된 증거가치에 대한 당사자 간 실질적 공방을 거치도록 하고, 특히, 감정결과에 대해서는 당사자의 의견진술기회를 반드시 부여하는 절차 정립을 위해 민사소송규칙 등 관련 규정을 정비
- 2015년부터 증인신문절차에 대해 전면녹음을 실시하고, 이러한 법정녹음 환경에서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입체적이고 효과적인 증인신문기법을 개발하여, 법정 중심의 진실규명절차를 더욱 강화

[기대효과] 충분한 증거제출 기회 확보를 통해 재판 만족도 향상

☑ 내 증거가 채택될지 여부가 투명해집니다. “같은 것은 같게, 다른 것은 다르게”라는 법언(法諺)이 증거채부에도 적용됩니다.

③ [방안] 양형심리의 강화

- 형사재판절차에서 사실인정절차에 비해 다소 취약한 재판절차로 지적되어 오던 양형심리절차를 강화하기 위해, 사건유형별 양형인자를 체계화하여 양형심리방식을 구체화하고, 양형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양형조사를 내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함

[기대효과] 양형심리 실질화를 통해 국민정서에 부합하는 양형실무 정착

양형심리 실질화로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양형이 사라지고 피고인도 양형에 승복하게 됩니다.

④ 위자료 기준 공개 등 사법의 투명성·편의성 증진 및 국민의 절차참여 확대

① [방안] 사실심 법관의 재량판단 기준 공개를 통한 사법의 투명성 강화

- 사실심 법관의 재량기준이 공개되지 않아 재량영역에 관한 당사자의 주장, 입증에 한계가 있고, 재판의 예측가능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음.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사실심 법관의 재량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여 재판절차와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아울러 법원의 기준에 따른 당사자의 자율적·화해적 분쟁 해결도 촉진하고자 함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인신사고 위자료 기준을 재점검 한 후 새로운 위자료 기준을 발표할 예정
 - 명예훼손 등 인격권 침해사건에 관해서는 지난 10년간 사실심 법원이 선고한 위자료 인정 액수와 요약된 사실관계를 정리한 위자료표를 발간하여 법원 내외에 공개할 계획
 - 간접강제금의 각급 법원 기준을 취합한 후 기준자료집을 발간하여 공개할 예정

[기대효과] 법관 재량권의 합리적 행사 통한 자의적 재판 지양

법관의 재량에 대한 잦은 불만이 줄어듭니다. 들쭉날쭉한 위자료가 아닌 예측가능한 위자료 액수로 재판의 신뢰도가 올라가고 분쟁의 자율적 해결도 가능해집니다.

② [방안] 형사재판 피해자의 진술권 보장

- 형사재판의 사실심 충실화와 재판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피해자의 진술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재판방식 개선을 추진함
- 피해자의 증인신문 신청은 원칙적으로 수용하고 의견진술의 기회도 적극적으로 부여하고자 함
- 2015년 일반 증인지원서비스를 16개 지방법원으로 확대하여 실시하고, 이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피해자가 형사재판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

[기대효과] 실체적 진실 발견 기능 강화와 피해자의 절차적 만족감 제고

☑ 범죄에 대해 가장 많이 알고 가장 많은 말을 하고 싶은 사람이 바로 피해자입니다. 법원이 이런 피해자의 말을 더욱 경청하겠습니다.

③ [방안] 전자소송을 통한 사법접근성 강화

- (전자소송 시스템 완비) 2015년 3월 집행 전자소송을 시행함으로써 가압류·가처분 등 보전처분부터 본안 사건 및 최종적인 강제집행 사건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전자적인 업무절차 구현 완료
- (민원 편의의 혁신적 발전) **2015년부터 판결등본, 확정증명원, 송달증명원 등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전자적 민원처리시스템** 단계적 구현 및 확산 ⇨ 민원서류 발급받기 위해 평일 근무시간 중에 해당 법원을 방문해야 할 필요 없게 됨

[기대효과] 편의성, 투명성 증진을 통해 국민의 절차적 만족도 제고

☑ 절차이용의 불편함으로 권리구제가 지연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자소송의 편리한 접근성으로 권리구제의 편의성을 높이겠습니다.

④ [방안] 소송비용 산입 변호사보수 현실화

- 소송비용에 산입되는 변호사보수를 상향 현실화함으로써 정당한 권리실행비용의 부담이 패소당사자에서 승소당사자로 전가되는 현상 방지

[기대효과] 남소 내지 부당응소 방지로 재판심리의 집중도 향상

☑ 남소와 부당응소는 다른 사람의 재판시간을 빼앗아 갑니다. 패소한 사람의 소송비용 부담을 올림으로써 정말로 억울한 사람들의 재판시간을 확보해 드립니다.

□ 개선방안에 대한 평가

- 충실한 재판에 대한 국민의 기대, 사회의 변화·발전이 부응한 법원의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
- 국민들은 이번 개선방안의 시행으로 제일 먼저 대면하게 될 1심 법원에서부터 ①부장판사급의 단독재판장에 의한 원속한 재판, ②전문심리관이 참여하는 준참심제 재판을 통한 심도 있는 재판, ③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를 통한 조기 증거확보에 근거한 충실한 재판, ④위자료 기준 공개 등을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재판을 경험하게 될 것임
- 종전에 발표된 개선안들이 일시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그친 단편적인 대책인 반면, 이번 개선안은 소송시작 전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부터 소송종료 후 확정증명원 전자발급까지, 단독재판장에 부장판사급 보임이라는 법원의 인사제도부터 전문심리관 제도 도입이라는 재판사무까지, 재판제도와 사법행정의 거의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대책이자 마스터플랜임
- 갈수록 복잡다기해지는 법적분쟁과 더욱 침예하게 대립하는 이해관계인들이 법원에 밀려들고 있는 현실에 주목하면서 한, 두 개의 제도개선만으로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실심 강화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 하에, 법원은 사실심 충실화라는 일관된 목적을 위해 마련한 여러 개선방안들을 동시에 시행함으로써 사실심 강화 효과의 극대화를 도모할 것임
- 아울러 법원은 확정증명원 등 각종 민원서류에 대한 전자적 민원처리시스템 구현,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 현실화 등 재판절차 전반의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재판의 기본 인프라 정비에도 힘쓸 것임

- 사실심 충실화는 상소율의 감소로 이어지고, 상소율 감소는 상고심의 심리여건을 개선하게 될 것이므로, 상고심은 국민의 권리구제, 법령해석 통일이라는 상고제도 본연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게 되고, 사실심은 다시 상고심의 피드백을 받아 그 기능이 강화될 것임
- 결국, 사실심 충실화는 상고심 기능 강화를 이끌어내는 마중물 역할을 시작하여, 다시 상고심 기능 강화가 사실심 강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형성함으로써, 특정 심급 강화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의 권리와 사회의 정의가 두루 실현되는 선진적인 사법 제도를 구축하는 출발점이 될 것임

□ 향후 계획

- 이상의 추진과제 및 세부 개선방안을 담은 『신뢰받는 법원』을 위한 사실심 충실화 마스터플랜』을 2014. 12. 5.(금) 개최 예정인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논의하여,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사실심 강화방안을 확정할 예정임
- 아울러 대법원은 외부 인사가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밖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등 사실심 충실화에 관한 국민의 다양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계획임
- 확정된 추진과제 및 개선방안은 제1심 및 제2심 재판의 질적 향상과 국민의 신뢰 확보방안으로 적극 추진하고자 함